

제1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20. 2. 25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원장
김석진 부위원장
표철수 상임위원
허 욱 상임위원
김창룡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 제1항 제1호에 의거, 의결사항 '가', '나', '다'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·반복적 안전이나 경미한 안전에 해당됨.

② 의결사항

가. 「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
(2020-11(서)-046)

- 재난발생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사전 예방적 정보제공과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 재난방송 준칙 일부조항을 신설하는 「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(2020-11(서)-047~048)

-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 및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·제59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한국방송공사 등 2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한국방송공사	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의2제4항제2호	2,125만원
엔씨에스미디어(주)	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제2호나목	1,500만원

다.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(2020-11(서)-049~051)

-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·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60조제2항 및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광주문화방송(주) 등 3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광주문화방송(주)	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제2호	500만원
(주)청주방송	「방송법」 제74조제2항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제1호	350만원
(주)채널에이	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제2호	500만원